

김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 3185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02. 28.
제출자 한종우의원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3년 2월 28일 한종우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개정이유

-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, 공인 사고 시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공인 관리 방법을 명시하여 공인관리 및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

3. 주요내용

-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-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시 절차를 규정함(안 제9조)
-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·재등록 및 폐기 시 공고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함(안 제10조)
- 공인의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- 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영의 인쇄사용 방법을 규정함(안 제12조)
-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 대장에 직인 날인 기록 대장에 등재하도록 함(안 제13조)
- 매년마다 인영을 날인하여 보존하도록 함(안 제14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공인의 재료, 색깔, 재등록, 폐기,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